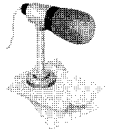




## 기업불능소 도축금지 토론회 현장

기업불능가축의 도축금지 및 보상과 관련하여 지난 5월 20일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토론회가 개최(주최·한국축산경제연구원/주관·축산신문)됐다. 이날 기조발제자로 나선 최대휴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장은 도축을 허용할 기업불능소의 유형과 기업불능소의 신고 및 판정절차, 질병검사, 폐기처리, 보상기준·절차 및 보상가격 산정에 대한 관련업계의 여론을 듣고 이를 앞으로 마련할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과장은 기업불능소의 도축을 금지하여 BSE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되, 골절 등 명백한 부상을 제외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 이번 '축산물가공처리법' 입법 취지임을 설명했다. 이에 부상이나 급성고창증, 난산, 산욕마비 소에 대해서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도축장 밖에서의 즉시 도살을 금지한 만큼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을 국가가 하겠다는 것. 따라서 그 보상 기준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



한 차원에서 기립불능소의 실거래 가격을 조사, 적절한 상한가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그러나 손실보상은 잔존가치액의 80%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회 의견을 덧붙여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 토론자로 나선 이승호 협회장은 정부의 대책없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광우병에 민감해진 소비자 인식 때문에 정상적인 모든 기립불능소를 도축금지하려는 것인 만큼, 모든 기립불능소에 대해 시가로 보상수매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 보상기준도 잔존가치액의 80%가 아닌 전액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보상기준은 도매시장 평균가격의 일정비율로 할 것을 주장했다. 오세관 농협중앙회 상무는 무엇보다 소비자 신뢰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전제하고, 도축금지 실시로 인한 양축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돼야 하는 만큼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불법거래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중복 건대 수의대 교수는 도축금지 대상과 범위를 정확히 정해야 혼선이 없으면서 구체적으로 도축금지 범위를 제시했고 이성식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장은 기립불능소 신고를 개업공수의사로 하도록 하고, 기립불능우 처리 전용도축장 및 처리시설 설치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이석 검역원 동물약품평가과장은 우리나라는 BSE 청정국임에도 OIE로부터 국가 등급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OIE에서 제시한 기본 점수인 30만점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 국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영 총주시 축산과장은 기립불능소 처리가 골칫거리라면서 소각, 랜더링, 매몰 등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무엇보다 환경부와 협의하여 폐기물처리법에 의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대표로 나선 김연화 한 국소비생활연구원장은 소비자가 조금이라도 꺼림칙하지 않고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이 될 수 있도록 신뢰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기립불능소에 대해 정부가 완전 수매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기초발제 : 기립불능 가축 도축금지 제조 운용방안

농식품부 최대휴 안전위생과장

### 부상·산육마비 등 가축 도축장 밖 도살 금지 기립불능소 잔존가치액 80%로 보상 제한·폐기 비용은 지자체 부담

정부는 2008년 5월 '축산물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기립불능소의 도축 시 전두수 검사를 의무화 하는 등의 BSE 예방활동을 강화했다. 기립불능소는 원인이 다양(약60여종)하고 대부분 BSE 및 안전성과 무관함에도 전체 기립불능소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상존해 있다. 이로 인해 도축장에서의 도축기피, 질병검사 증명서 허위제출 등 불법행위가 파생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회가 지난 4월 17일 기립불능가축 도축금지 및 보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법률'을 의결함에 따라 정부는 5월 8일 이 법을 공포했고, 시행은 6개월이 경과한 오는 11월 9일이다.

####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내용

이의 핵심 내용은 부상·난산·산육마비·급성고창증 등 가축에



농식품부 최대휴 안전위생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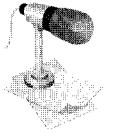


대해 도축장 밖 도살을 금지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기립불능 가축의 도축을 금지한다. 도축 금지된 기립불능 가축은 질병검사 및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한다. 단, 질병검사 항목·검사방법, 보상기준·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및 폐기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축 금지된 기립불능 가축은 질병검사 및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며, 국가 및 지자체는 가축소유자의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는 한편 기립불능 가축을 도살·처리, 식용 공급한 경우 처벌한다.

#### ▶기립불능소 발생현황 분석

기립불능소의 발생규모는 도축검사 결과와 가축공제에 의한 보험급여 내역을 토대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 국내 기립불능소 발생규모는 가축공제금이 지급된 기립불능소 1만7백91두로 추정된다. 발생원인별 기립불능소의 규모는 08년 도축장에서 확인된 기립불능소 7천1백16두로 추정되며, 원인별 기립불능소 발생규모는 총 5만9천4백44두로 추정된다. 기립불능소의 일부 약 12%만 기립불능 상태로 도축 출하되고, 나머지는 치료 후 출하 또는 폐기처분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07년의 경우도 도축장에서 확인된 기립불능소 3천6백두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기립불능 상태로 도축되는 비율은 높지 않다. 발생 원인별로는 축종에 따라 젖소는 산육마비, 한우는 부상이 수위를 차지했다.

#### ▶기립불능소 도축금지 시행 절차



기립불능소 발생사실을 신고하면 현장 조사 및 도축금지 대상인지를 판정한다. 이어 시료 채취 등을 통해 검사를 한 후 소각·매몰 또는 랜더링 후 매몰하며, BSE 유사증상 기립불능소가 아닌 경우에는 비만추동물용 사료 또는 비료 등으로 재활용한다. 보상은 잔존가치액의 일부를 보상한다. 국회는 잔존가치액의 80% 수준으로 계상했다.

#### ▶기립불능소 잔존가치액의 80% 제한

법 개정안 국회(농림수산식품위)는 기립불능소가 연간 5만9천두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르면 부상(2만두) 및 급성고창증(6천두)인 소, 난산·산욕마비인 소 중 치료가능한 소(1만두)는 식품안전성과 무관하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도축한다. 질병 등의 이유로 부적합 처분되는 소(2천두)는 보상대상에 제외한다. 손실보상이 필요한 소는 나머지 2만2천두로 추정하고, 손실은 당해 기립불능소가 가지고 있는 잔존가치(24만4천원에서 65만2천원)로 하고, 가축소유자들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므로 잔존가치액의 일부 80%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용부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예와 같이 보상금은 국가, 소각 등 폐기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토록 한다.

### ■ 지정토론

#### 이승호 회장(우리협회)

기립불능소 도축금지의 검토 배경은 정부의 대책없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광우병에 민감해진 소비자 인식 때문에 일선 도축장의 식용에 문제가 없는 모든 기립불능소에 대한 전면 도축거부, 기립불능소 출하처 상실, 소비자 불신 야기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문제의 발생원인 식품안전 때문이 아니라 기립불능은 곧 광우병이라는 국민인식 때문이다. 지금도 합법적인 기립불능소 도축을 도축장이 거부하고 있고, 향후 도축이 허용되는 기립불능소가 언론 등에 노출될 시 또다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모든 기립불능소를 정부가 수매해야 한다.

또한 기립불능소 도축거부 문제는 농가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부작용 때문이므로 잔존가치의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가축공제, 가축보험 자료를 인용한 기립불능소 잔존가치액 20만원대(젓소의 경우)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최근 도매시장 평균가격의 일정비율(젓소 100만원 내외)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책은 한 번 세울 때 확실히 해야지, 예산 조금 아끼려다가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 오세관 상무(농협중앙회)

명백한 부상으로 식품안전상 문제가 없는 소를 제외한 모든 기립불능소에 대해 도축을 금지하는 법안 추진에 공감한다. 그러나 이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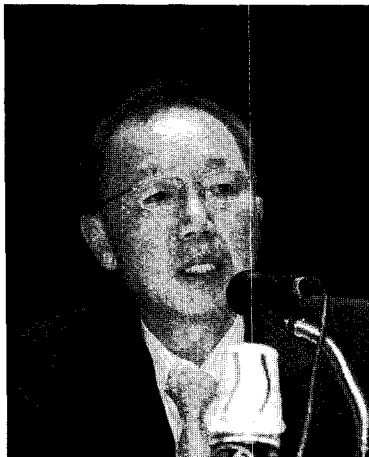
이승호 회장(우리협회)



오세관 상무(농협중앙회)



이중복 교수(건대 수의과학대)



이성식 소장(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법을 적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도축장 운송과정에서 폐사 발생시 보상 방안이 없고 낮은 수준의 보상금 책정시 또 다른 불법거래 양산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하위법령 개정시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도축금지 제외 대상선정에도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싶다.

**이중복 교수(건대 수의과학대)**

식품에 대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겠지만 최근 안전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안전기준을 필요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향이 있다. 기립불능소에 대해 몽땅 도축을 금지하는 것은 많은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른다.

도축금지 범위는 24개월 이상의 소가 기립불능상태이며, 한 쪽 혹은 두 쪽의 뒷다리를 후방으로 팻팻하게 펴고 있는 경우, 24개월령의 소가 심박동 숫자가 분당 60번 이하일 경우, 24개월령 이상의 소가 세 번의 연속적인 축지, 클립보드 접촉, 후레시 과민반응, 혹은 박수 등 세 번 연속으로 놀라는 반응을 보일 경우, 24개월령 이상의 소가 주위 다른 소와 비교했을 때 건강상태가 2 혹은 그 이하일 경우로 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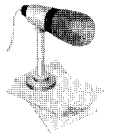
**이성식 소장(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기립불능소 도축금지법을 시행하기 이전에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한다. 현장에서 볼 때 기립불능소 도축금지에 따른 신고 조사 체계가 중요한데 우선 기립불능소 신고 단계에서 신고 대상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또 기립불능소는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소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폐기돼야 한다. 그런 만큼 소비자 보호 못지 않게 생산자 보호를 위한 보상책이 충분히 강구돼야 한다.

기립불능소에 대한 질병조사는 검역원과 각도 축산위생연구소로 제한하고 그래도 인원이 부족할 경우 개업 공수의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립불능우 처리 전용도축장 및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주이석 과장(검역원 동물약품평가과)**

BSE 검사 및 감별 진단 체계에 대해 말하겠다. 우선 국내 검사를 위한 관련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근거하여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에 의하여 각 지자체에서 1차검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 때 사용되는 예찰프로그램 대상 소들은 BSE 임상증상을 보이는 소, 신경증상을 보이는 소, 광견병 진단을 위해 병성감정 의뢰된 소(광견병음성소), 보행장애가 있는 앓은뱅이 소(기립불능소)로 하고 있다. 감별진단은 유사증상소들에 관여하는 BSE에 음성인 경우 혈액 및 뇌 조직을 국립수의과학검역의 질병진단센터로 보내지고 여기서 감별진단이 실시된다.

현재 유사증상소 622건을 검사, 감별진단하여 36만3천점을 획득했다. 이는 OIE에서 정하고 있는 청정국 지위 30만점을 넘어선 것으로 우리도 광우병 청정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권영 과장(충주시 축산과)**

그동안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젖소의 칼슘부족에 의한 기립불능소 발생시 수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긴급도살을 허용했다. 그러나 개정 법률에는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기 위하여 명백한 부상을 제외한 질병으로 인한 기립불능소의 도축을 금지하고 주요 질병 유무를 검사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처리하고 도축금지에 따른 보상을 국가가 부담토록하고 있다.

문제는 기립불능소 발생시 처리 방법이다. 처리방법으로 소각, 열처리(랜더링), 매몰이 있는데 이 방법이 나름대로 모두 문제점이 있다. 또한 단순 부상 등으로 인한 기립불능소의 도축 금지와 보상은 국가적으로 큰 손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김연화 원장(한국소비생활연구원)**

축산식품은 무조건 위생적이고 안전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기립불능소의 도축금지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립불능소 판별 전문위원회의 설치를 비롯 생산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합의 등 법 시행전 준비와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축산 정책이 안전에서 안심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소비자 안전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예상되는 부작용은 사전에 철저히 막아야 할 것이다. 1%라도 위험부담이 있는 소는 절대 도축되어서는 안 된다. 소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꺼림칙하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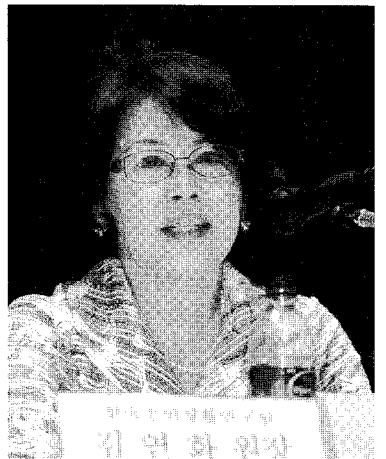
발췌 : 축산신문 5월 26일자



주이석 과장(검역원 동물약품평가과)



권영 과장(충주시 축산과)



김연화 원장(한국소비생활연구원)